

□ 제안이유

○ 제60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회 기 : 1997. 9. 2 ~ 9. 11 (10일간)

【 2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년월일 : 1997. 9. 2.

발 의 자 : 김영안의원외 2인

□ 주 문

군정질문(사회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제안이유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주군 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3 】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8. 1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소하천정비법이 '95. 1. 5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5. 7. 1 제정되어 '95. 7. 6부터 시행됨에 따라
- '96. 10. 29 고시한 (양주군고시 제82호)소하천 2개소와 '97. 7. 11 고시한(양주군고시 제73호) 소하천 107개소등 109개소 149.57㎢의 소하천에 대한 관리와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읍·면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편의을 증진함은 물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뿐 아니라,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의 제명을 통일시키기 위함.  
 ※ 소하천은 공유수면중 일부구간으로 허가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읍·면으로 위임 처리되고 있던 사무임.

 주요골자

- 가. 소하천의 관리와 토지·유수의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
- 나.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허가에 관한 권한
- 다.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 라. 허가 받은자에 대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 등의 감면
- 마.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및 허가기간 연장허가
- 바. 소하천정비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양주군사무의읍 · 면위임조례”를 “양주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 제31호 다음에 “제32호 내지 제45호”를 삽입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위 임 사 무 명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건 설 과		○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읍·면장
	32	· 소하천관리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3항	
	33	· 유수의 점용허가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	
	34	· 토지의 점용허가	동법 제14조제1항제2호	
	35	·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허가	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36	·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동법 제14조제1항제4호	
	37	·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내용 공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제33호 내지 제36호의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38	·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동법 제22조 제1항	
	39	· 점용료 등의 감면	동법 제22조 제4항	
	40	· 원상회복의무 면제 승인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41	· 허가의 효력회복	동법 제20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다음의 처분		
	42	· 허가의 취소	동법 제17조	
	43	·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물건의 이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17조	
	44	·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의 제한	동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	
	45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제한	동법제4조제2항 및 동법제15조	

## 양 주 군 보

제 55 호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거 법 규	수임기관
지역경제과	0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면장
	1	• 시장사용허가	양주시장사용조례제1조	
	2	• 사용료 조정 및 징수	동조례제3조 제1호	
	3	• 주소의 이동신고	동조례제11조	
	4	• 시장사용 폐지신고	동조례제12조	
	5	• 사용취소 및 정지	동조례제13조	
산림과	0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 입산신고	산림법제98조	
	2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 물에 대한 반출확인증(허가)반납 과 반출확인용 극인た기 및 생산 확인표 작성	동법제9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제98조	
	3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위한 신고	동법제100조의2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4.5.6항	
건설과	0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 도로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	
	2	•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제한, 체납 등	동법제19조 및 제19조 의2,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 양 주 군 보

제 55 호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건 설 과	3	• 부당이득금의 징수, 손배자 부담금	동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읍·면장
	4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동법제25조, 제26조 제27조	
	5	◦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점용허가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도로법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4조, 제43조, 제44조	
	6	• 전용료 부과 징수 ◦ 제5항에 의하여 허가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동법시행령제26조의3	
	7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동법제45조	
	8	•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동법시행령제2조	
	9	•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동법시행령제3조	
	10	• 회사발기인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제4조	
	11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제5조	

## 양 주 군 보

제 55 호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 규	수임기관
건설과		o 도로(군도) 접용허가를 받은자가 법령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조치 를 취하는 권한		읍·면장
	12	• 허가 취소	동법 제74조 제1항	
	13	• 허가효력의 정지		
	14	• 허가조건의 변경		
	15	• 공사의 중지		
	16	• 공작물의 개축		
	17	• 건물의 이전명령		
		o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18	• 토지 형질변경	동법 제50조제4항	
	19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를 하는 행위		
	20	•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를 한 행위		
		o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권한		
	21	•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제50조제4항 제1호, 제5항	
	22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건물의 부가증치 허가	동법제50조 제4항 제2호, 제5항	

## 양 주 군 보

제 55 호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전 설 과	23	• 죽목의 재식, 벌채허가 ○ 도로(군도)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	동법제50조 제4항 제3호, 제5항	읍·면장
	24	•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동법제50조 제3항	
	25	• 도로손케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동법제67조 제1항	
	26	•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제78조	
	27	•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 도로(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동법시행규칙제18조	
	28	• 도로를 손케하는 행위	동법제47조	
	29	•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0	•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31	○ 사도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를 하거나 사용료 징수 허가	사도법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령제4조	
도 시 과	1	○ 토지출입허가	도시계획법제5조	읍·면장
주 택 과		○ 주택사업용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1	•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 第2章 地方自治

### 第1節 通 則

●地方自治法(1988.8.4.6)  
法律第4004號全文改正

改正	1989.12.30	法律第4162號
	1990.12.31	法律第4310號
	1991.5.23	法律第4367號
	1991.12.31	法律第4464號
	1994.3.16	法律第4741號
	1994.12.20	法律第4789號
	1995.1.5	法律第4877號
	1995.8.4	法律第4959號
	1995.12.29	法律第5069號(教育法)

### 第1章 總 約

#### 第1節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여 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12·30)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12·20>

1.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여,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改正 94·12·20>

置하는 경우에는 증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증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

(予文改正 94·12·20)

第9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辞任)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辞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90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

(本條新設 94·3·16)

第91條 削除 (94·3·16)

## 第2款 權 限

第92條 (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第93條 (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市·道知事와 市長; 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행한다.

第94條 (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第95條 (事務의 委任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純粹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96條 (職員에 대한 任免權等)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教育訓練·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第97條 (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第3款 地方議會와의 관계

第98條 (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超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賛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6>

第99條 (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82. 12. 31 ~ 1992. 5. 6]

개정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1015호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1983. 4. 12	대통령령 제 11099호 (서식제정절차규정)
	1983. 4. 30	대통령령 제 11120호 (허전법시행령)
	1983. 6. 10	대통령령 제 11143호 (선박법시행령)
	1983. 7. 9	대통령령 제 11167호 (경업법시행령)
	1983. 7. 26	대통령령 제 11182호 (창고업법시행령)
	1983. 8. 3	대통령령 제 11184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3. 8. 30	대통령령 제 11214호 (항만법시행령)
	1983. 8. 31	대통령령 제 11218호 (우편법시행령)
	1983. 12. 31	대통령령 제 11317호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84. 2. 16	대통령령 제 11352호 (철도관서직제)
	1984. 2. 28	대통령령 제 11365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84. 2. 29	대통령령 제 11372호
	1984. 6. 30	대통령령 제 11456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84. 8. 30	대통령령 제 11491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4. 8. 30	대통령령 제 11492호 (해운법시행령)
	1984. 11. 23	대통령령 제 11547호 (정부공문서규정)
	1984. 12. 8	대통령령 제 11554호 (무역거래법시행령)
	1984. 12. 31	대통령령 제 11613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5. 2. 27	대통령령 제 11646호
	1985. 6. 28	대통령령 제 11711호 (사료관리법시행령)
	1985. 8. 12	대통령령 제 11737호 (중앙교육평가원직제)
	1986. 3. 15	대통령령 제 11871호 (항로표지법시행령)
	1986. 4. 26	대통령령 제 11890호
	1986. 5. 31	대통령령 제 11911호 (체신관서직제)
	1986. 8. 18	대통령령 제 11954호 (국립재활원직제)
	1986. 12. 31	대통령령 제 12043호 (암흑관리법시행령)
	1987. 4. 10	대통령령 제 12138호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1987. 4. 10	대통령령 제 12139호
	1987. 5. 23	대통령령 제 12168호 (과학기술처직제)
	1987. 7. 1	대통령령 제 12207호 (최저임금법시행령)
	1987. 7. 1	대통령령 제 12212호 (관공진흥법시행령)
	1987. 8. 13	대통령령 제 12225호 (선플안전법시행령)
	1987. 12. 5	대통령령 제 12291호 (임업연수원직제)
	1987. 12. 9	대통령령 제 12306호 (지방노동관계법시행령)
	1987. 12. 15	대통령령 제 12315호 (체신관서직제)
	1987. 12. 31	대통령령 제 12338호 (도서법시행령)
	1988. 5. 28	대통령령 제 12457호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1988. 6. 27	대통령령 제 12472호
	1988. 8. 16	대통령령 제 12505호 (돌봄관리법시행령)
	1989. 2. 16	대통령령 제 12623호 (노후부적제)
	1989. 6. 15	대통령령 제 12725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89. 6. 15	대통령령 제 1272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89. 9. 5	대통령령 제 12799호
	1990. 1. 3	대통령령 제 12895호 (문화부직제)
	1990. 1. 3	대통령령 제 12899호 (환경처직제)
	1990. 1. 18	대통령령 제 12906호 (건축법시행령)
	1990. 6. 21	대통령령 제 13024호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1990. 7. 14	대통령령 제 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0. 12. 18	대통령령 제 13184호
	1990. 12. 27	대통령령 제 13188호 (기상청직제)
	1991. 2. 1	대통령령 제 13282호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1991. 2. 1	대통령령 제 13284호 (체육청소년부직제)
	1991. 2. 18	대통령령 제 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1991. 4. 18	대통령령 제 13353호
	1991. 6. 19	대통령령 제 13390호 (사무관리규정)
	1991. 7. 23	대통령령 제 13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동직제)
	1991. 8. 24	대통령령 제 13454호 (총무처와 그 소속 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 13563호
	1992. 1. 3	대통령령 제 13567호 (국방조직 및 정원에관한통칙)
	1992. 3. 28	대통령령 제 13623호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1992. 5. 6	대통령령 제 13638호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1992 · 8 · 17	대통령령 제 13710호 (항공법 시행령)
1992 · 8 · 31	대통령령 제 13724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2 · 12 · 31	대통령령 제 13823호
1993 · 2 · 20	대통령령 제 13850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 · 3 · 6	대통령령 제 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3 · 3 ·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3 · 5 · 11	대통령령 제 13883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3 · 7 · 13	대통령령 제 13929호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3 · 7 · 26	대통령령 제 13939호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1993 · 8 · 14	대통령령 제 13958호 (도로법시행령)
1993 · 12 · 6	대통령령 제 14015호
1993 · 12 · 31	대통령령 제 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4 · 3 · 2	대통령령 제 14183호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4 · 4 · 30	대통령령 제 14231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
1994 · 5 · 4	대통령령 제 14255호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4 · 5 · 4	대통령령 제 14256호
1994 · 6 · 16	대통령령 제 14281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4 · 6 · 28	대통령령 제 14291호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1994 · 7 · 4	대통령령 제 1431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4 · 7 · 16	대통령령 제 14326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1994 · 7 · 16	대통령령 제 14327호 (직업안정법시행령)
1994 · 7 · 23	대통령령 제 14339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1994 · 8 · 3	대통령령 제 14353호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1994 · 8 · 3	대통령령 제 14354호 (의료법시행령)
1994 · 10 · 29	대통령령 제 14407호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 14438호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4 · 12 · 31	대통령령 제 14508호
1995 · 2 · 24	대통령령 제 1453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등 중개정령)
1995 · 3 · 23	대통령령 제 14548호 (소년원법시행령)
1995 · 4 · 15	대통령령 제 146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 · 4 · 20	대통령령 제 14630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1995 · 5 · 12	대통령령 제 14645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1995 · 6 · 23	대통령령 제 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995 · 6 · 30	대통령령 제 14686호 (주요농작물 종자법시행령)
1995 · 7 · 1	대통령령 제 14708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5 · 7 · 6	대통령령 제 14721호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1995 · 10 · 19	대통령령 제 1479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5 · 11 · 30	대통령령 제 14816호 (운輸 행위동 방지법시행령)
1995 · 12 · 22	대통령령 제 14835호 (농지법시행령)
1995 · 12 · 29	대통령령 제 1484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6 · 1 · 19	대통령령 제 14899호
1996 · 2 · 22	대통령령 제 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6 · 2 · 22	대통령령 제 1492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6 · 3 · 11	대통령령 제 14937호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6 · 3 · 30	대통령령 제 14960호 (통계법시행령)
1996 · 4 · 6	대통령령 제 149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6 · 6 · 29	대통령령 제 15089호 (농지개량 조합법시행령)
1996 · 8 · 8	대통령령 제 15137호
1996 · 11 · 18	대통령령 제 15171호 (농업창고업법시행령 폐지령)
1996 · 12 · 5	대통령령 제 15176호 (식물방역법시행령)
1996 · 12 · 31	대통령령 제 15229호 (농지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行政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2·2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2·29>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 (위임·위탁의 기준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84·2·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84·2·29>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

##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84·2·29>

제4조 (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교육장을 포함한다)·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2·24>

(전문개정 94·12·31)

제5조 (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84·11·23, 91·6·19>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갈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84·2·29>

# 小河川整備法令集

## 内務部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制定 1995. 1. 5 法律 第4,873號 第1章 總則	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3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條(目的) 이 법은 小河川의 整備·이용·관리 및 保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災害를 預防하고 生活環境의 改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小河川"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또는 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河川으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名稱과 區間이 지정·告示된 것을 말한다. 2. "小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區域을 말한다.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가. 小河川의 形狀과 機能을 유지하고 있는 土地의 區域</p> <p>나. 小河川附屬物이 設置된 土地의 區域</p> <p>다. 堤防이 있는 곳은 그 堤防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土地의 區域</p> <p>3. “小河川附屬物”라 함은 小河川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堤防, 鎖岸, 漏, 水門等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p> <p>4. “小河川의 整備”라 함은 小河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新設·改築 또는 浚渫·補修등에 관한 工事를 말한다.</p> <p>第3條(小河川의 지정 및 管理廳) ① <u>小河川은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지정한다.</u></p>	<p>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② <u>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名稱과 區間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取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③ <u>小河川의 整備와 그 维持管理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小河川을 지정한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이 이를 負擔한다.</u></p> <p>第4條(小河川豫定地의 告示) ① <u>管轄廳은 小河川의 整備에 관한 計劃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각 종 工事計劃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小河川區域으로 極入될 土地가 있을 때에는 당해 土地를 小河川豫定地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u>管轄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豫定</u></p>	<p>(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地를 지정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다른 法律에 의하여 小河川區域에서 権利를 設定하거나 기타 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處分處은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管理廳이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을 公告한 때 또는 管理廳이 아닌者が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許可</p>	<p>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중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決定·認可 또는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본다.</p> <p>1. 山林法 第62條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等의 許可</p> <p>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立木竹의 伐採等의 許可</p> <p>3.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許可, 同法 第12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p> <p>4.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승인</p> <p>5.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許可</p> <p>6.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협의</p> <p>7.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許可</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④菅理廳이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거나 小河川工事를 許可하고자 한 경우에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関係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第2章 小河川의 整備</b></p> <p>第6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수립) ①菅理廳은 内務部廳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에 대한 整備方向의 指針이 된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을 거쳐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小河川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li> <li>2. 水系別 小河川網의 구성</li> </ol>	<p>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고수부지 조성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 생활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3. 당해 지역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li> <li>4.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li> </ol> <p>②내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3. 災害預防 및 環境改善과 水質保全에 관한 사항</p> <p>4. 小河川의 多目的 이용과 住民의 所得增大에 관한 사항</p> <p>5. 기타 大統領령이 징하는 사항</p> <p>③内務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綜合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그 地域에 관한 開發計劃과의 관련성을 강도하여야 한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规定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調用한다. 다만, 大統領령이 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③내무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이를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하천의 일부의 채지 또는 변경</li> <li>2. 운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li> </ol>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第7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수립) ①管理事務은 内務部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의 规定에 의한 総合計劃에 따라 5年마다 小河川整備中期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市·道知事들 거쳐 内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中期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재해등의 발생으로 소하천정비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3.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소하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中期計劃에는 年度別小河川整備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중기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대책 3.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第8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수립) ①管理事務은 内務部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7條의 规定에 의한 中期計劃에 의하여 매년 다음 年度의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市·道知事들 거쳐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施行計劃에는事業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대상 소하천 신장의 다양성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施行에 필요한 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管 理廳은 施行計劃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内務部令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음하여야 한다.</p> <p>第9條(小河川臺帳) ①管 理廳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p>	<p>2. 중기계획과의 적합성</p> <p>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p> <p>4. 인정한 관리청의 소하천징비계획과의 연계성</p> <p>5. 기타 여간민동으로 인한 수정의 필요성</p> <p>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③내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川指定地를 告示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小河川臺帳의 作成·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内務部令으로 징한다.</p> <p>第10條(非管理廳의 工事施行) ①管 理廳이 아닌者は 管理廳의 허가를 받아 小河川工事を 施行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령이 징하는 경미한 工事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하천공사허가신청서에 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0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소하천의 보전행위를 말한다.</p> <p>③관리청이 법 제1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を 施行하는 者가 그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지체없이 <u>管 理 者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u></p>	<p>1.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여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진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여부 3.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4. 구조물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 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제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①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한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③管 理 者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许可를 함께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大統領 승인을 칭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工事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p>	<p>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u>②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이한 사유로 착공예정일이나 준공예정일내에 공사를 착공 또는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청에 미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u>          제9조(소요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함께 있어서 공사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이거나 공사에 6월이상 소요되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소요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공사비의 예치는</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11條(住民意見의 聽取등) 管理廳은 小河川의 지정 및 小河川의 整備에 관하여 大統領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部門家 및 당해 지역의 住民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p>	<p>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③관리청은 소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자체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0조(주민의견의 청취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p> <p>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p> <p>4. 기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키야 한다.</p> <p>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p> <p>3. 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사항</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第12條(土地등의 收用) ①管 理 麻 은 第 8 條의 規 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라 小河川의 整備를 施 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施行計劃이 실시되는 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物件에 관한 所有權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第 8 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戒決의 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p>	<p>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2年이내에 할 수 있다.</p> <p>③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準用한다.</p> <p>第13條(費用補助)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小河川의 整備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管理廳에 补助할 수 있다.</p> <h3>第 3 章 小河川의 保全</h3> <p>第14條(小河川의 占用等) ①小河川區域안에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者は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坑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침용등의 허가범위)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동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1. 엉동의 목적으로 유수 및 도지를 관습적으로</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1. 流水의 占用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일시로 설치하는 경우	
2. 土地의 占用		
3. 小河川附屬物의 占用·新築·改築·변경 또는 除去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4. 기타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变更		
5. 土地의 굽착·盛土 또는 切土 기타 土地의 形狀變更		
6. 土石·모래·자갈·竹木 기타 小河川產出物의 採取		
7. 小河川의 汚損行為		
②第5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管理廳과 이리 協議한 경우에는 그 協議된 범위내에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 事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 許可받은 범위내 에서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第3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지정·告示	제12조(점용등의 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당시 당해 小河川區域안에서 小河川附屬物 또는 기타 工作物을 設置하였거나 占用하고 있는者は 당해 小河川의 지정·告示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점용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등 점용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나 계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15條(許可의 制限) 管理廳은 災害發生의 危險이 있거나 小河川의 整備 및 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小河川豫定地안에서는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第16條(原狀回復義務)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	제1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여 小河川工事의 허가를 받거나 第14條의 规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失效되거나 占用 또는 사용을 禁止한 경우에는 小河川을 原状으로 회復시키야 한다. 다만, 原状회복을 할 수 없거나 原状회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理廳은 허가를 받은 誰의申請 또는 機權에 의하여 原状회복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p> <p>②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原状회복義務가 免除된 때에는 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 物件은 無價으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轉屬된다.</p> <p>③ 管理廳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原状회복의義務履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原状회복에 소요되는 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管理廳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p>	<p>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를 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정용등의 허가를 함께 있어서 허가신청인에게 벌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상회복비용으로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소요공사비가 원상회복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비용의 예치는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③ 관리청은 허가신청인이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켰거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17條(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허가를 取消하거나 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 物件의 移轉·세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計畫에 위반한 때 2. 虚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法令의 规定에 의하여 관계 行政廳의 허가·認可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取消되었거나 그 效力이 失效되어 이 法에 의한 허</p>	<p>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허가 불필요하게 된 때</p> <p>4. 허가에 관계되는 工事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가 禁止된 때</p> <p>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칭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第18條(公益을 위한 處分)</u> ①管理廳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허 가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한 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1.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2. 小河川의 保全 및 災害豫防 등 公益에 대한 抜本을 제거하거나 經歎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 3.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p> <p>②第17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p> <p><u>第19條(管理廳에 대한 監督)</u> ①小河川의 整備· 保全에 관하여 内務部長官은 管理廳에 대한 指 導·監督을 할 수 있다.</p> <p>②市·道知事은 小河川의 保全 및 灾害의豫防, 公益의豫防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管理廳이 행한 치분이나 施行하는 工事에 대하여 取消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제14조(소하천 정비상태의 점검) ①관리청은 소 하천의 정비상황과 소하천의 짐용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p>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p>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第20條(許可의 失效) 管理廳이 의 法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工事着手期限이나 竣工期限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期日안에 工事を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는 효력을 失却한다. 다만, 管理廳은 효력이 失却된 날부터 3月이내에 效力回復申請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遷及하여 回復시킬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補 運 則</p>	<p>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합동으로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第21條(收益과 費用의 범위등) ①小河川으로부	제15조(소하천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법	

小 河 川 整 備 法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令	備 考
<p>터 생기는 收益 및 小河川의 整備등에 관한 貨川의 범위와 收益金使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管理廳은 小河川의 整備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 利益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小河川의 整備에 필요한 貨川의 일부를 負擔시킬 수 있다.</p>	<p>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처분금</li> <li>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한 비용</li> <li>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료등·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li> <li>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li> <li>소하천부속물중 불용물건의 처분금</li> <li>기타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li> </ol> <p>③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22條(占用料 등의 徵收) ①管理院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등 小河川產出物의</p>	<p>1.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것외에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5항 자세한 제정이유</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採取料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產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管理院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利益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 대상인 財產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續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管理院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사용이</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公 益 을 目 的 으로 하는 非 儲 利 事 業 을 위 한 것 일 때에는 占 用 料 등 或 是 許 可 手 數 料 를 免 见 할 수 있다.</p> <p>⑤ 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规 定 에 의 한 占 用 料 등 과 不 儲 利 得 金 및 許 可 手 數 料 는 당 해 地 方 自 治 团 體 의 收 入 으로 하 며 그 金 額 과 徵 收 方 法 및 第 4 項의 规 定 에 의 한 占 用 料 등 과 許 可 手 數 料 的 免 见 對 象 은 당 해 地 方 自 治 团 體 의 条 例 로 정 한 다.</p> <p>第 23 條(負擔金等의 強制徵收) 第 21 條第 2 項의 规 定 에 의 한 負 擔 金, 第 22 條第 1 項의 规 定 에 의 한 占 用 料 등 및 同 條 第 2 項의 规 定 에 의 한 不 儲 利 得 金 을 납 부 하 지 아니 한 者 가 있 을 때에는 地 方 稽 滯 納 處 分 的 例 에 의 하 이 이 를 徵 收 한다.</p>		
第 24 條(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 第 8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條의 规 定 에 의 한 施 行 计 划 에 따 른 小 河 川 의 整 備, 第 18 條의 规 定 에 의 한 管 理 麹 的 치 분 또는 命 令, 第 19 條第 2 項의 规 定 에 의 한 市·道 知 事 的 치 分 또는 命 令 으로 인 하 이 損 失 을 입 은 者 가 있 을 때에는 管 理 麹 은 그 損 失 을 补 償 하 어 야 한 다.</p> <p>② 第 1 項의 规 定 에 의 한 損 失 补 償 에 있어서는 管 理 麹 은 損 失 을 입 은 者 와 协 議 하 어 야 한 다. 이 경 우 协 議 가 成 立 되 지 아니 하 거나 协 議 를 한 수 없 을 때에는 管 理 麹 은 스 스로 결 정 한 금 액 을 損 失 을 입 은 者 에게 支 给 하 어 야 한 다.</p> <p>③ 第 2 項後段의 规 定 에 의 한 补 償 에 대 하 이 不 服 이 있는 者 는 債 借 金 의 지 급 을 받 은 날 부 터 30 日 이내에 土 地 收 用 法 第 28 條의 规 定 에 의 한 관 한 土 地 收 用 委 员 會 에裁決 을 申 請 할 수 있 다.</p> <p>④ 第 1 項의 경 우에 당 해 損 失 이 第 18 條第 1 項</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3號의 规定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管理處은 그 邪業을 施行하는 者로 하여금 그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p> <p>第25條(廢川敷地등의 交換) 管理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의 整備등으로 인하여 생긴 廢川敷地(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小河川에 擔入된 他人의 土地와 交換할 수 있다.</p>	<p>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관리청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편입전의 상황·면적·수리이용시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토지의 가격평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26條(権限의 委任) 内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権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5章 罰則</p>	<p>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당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액이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p> <p>④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p> <p>제17조(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第27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없이 小河川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하여 公共의 被害를 發生하게 하거나 流水에 支障을 초래하게 한 者</li> <li>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工事를 시험한 者</li> <li>3.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流水의 占用등을 한 者</li> <li>4.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li> </ol> <p>第28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 또는 財產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附 則</p> <p>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②(行政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 의하여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許可·認可·승인등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 칙</p> <p>이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p>	

小河川整備法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備考												
	<p>[별표] 소하천공사 및 짐용·사용시 예치할 원상회복비용 의 산정기준(제13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별</th><th>예 치 액</th></tr> </thead> <tbody> <tr> <td>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td><td>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td></tr> <tr> <td>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공작 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td><td>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td></tr> <tr> <td>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 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td><td>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td></tr> <tr> <td>4.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td><td>짐용료등의 100 분의 30</td></tr> <tr> <td>5. 기타 소하천 짐용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이 필요한 경우</td><td>짐용료 또는 사 용료의 100분의 30</td></tr> </tbody> </table> <p>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사업별	예 치 액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공작 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 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4.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짐용료등의 100 분의 30	5. 기타 소하천 짐용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이 필요한 경우	짐용료 또는 사 용료의 100분의 30	
사업별	예 치 액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공작 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 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총 공사비의 100 분의 10													
4.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짐용료등의 100 분의 30													
5. 기타 소하천 짐용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이 필요한 경우	짐용료 또는 사 용료의 100분의 30													

## 小河川整備法施行規則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제정 1995. 7. 6 내무부령 제652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소하천지정 고시등) ①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제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의 내용중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한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3 호서식의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측적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 5 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채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소하천별로 사업시행의 위치·사업량·사업비 기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시행계획을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대상중에 농어촌특별세로 추진하는 농어촌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관한 지방환경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 6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①관리청은 법 제 8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자체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계시판에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 7 조(소하천대장) ①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 8 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영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 착공 또는 준공기간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점용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께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제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기간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 정한 기간이 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등 허가신청서등) ①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제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무연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연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하천수의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징비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小 河 川 整 備 法 施 行 規 則

제17조(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승인내용을 내무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기간

(제11조관련)

허 가 사 항	기 간
1. 유수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4.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재거	설계서상의 공기
5.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기
6. 포지의 굽적·성토 또는 철토 기타 포지의 형상변경	1년
7. 토석·모래·자갈·죽죽 기타 소하천선출물의 채취	1년
8. 소하천의 오손행위	1년
9.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교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등을 위한 점용	입구
10. 기타 소하천점용	1년

비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끝재체적의 경우에  
는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양 주 군 수 일 령 기



1997년 5월 6일

양주군 조례 제 1613 호

###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  
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  
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  
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라 다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의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별표2의 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군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양 주 군 수 읍 행 규 칙



1997년 6월 9일

양주군규칙 제104/호

##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허가수수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약년도 요금은 약년도 3월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은 농지세의 납기에 따라 다르나 당해연도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2의 점용료등 감면기준중 제8호 규정의 "군수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자력에 의하여 새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6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군군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